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1부
 2. 청 원 서 1부. 끝.

2016 년 1 월 28 일

청 원 인

성 명 : 엄 혜 성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소 개 의 원 : 엄 혜 성 (인) 외 2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엄혜성
건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엄혜성 외 2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제 18회 임시회의에서 저희가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대상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직접 질의에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면을 변질시킨다고 판단하며, 이에 본 위원회는 본 안건을 발의해 국정감사의 행정부의 감사와 비판 즉, 본질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p> <p>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p> <p>‘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보조자)의 ①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항.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응답 중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p>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국정감사란 국회가 정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감사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면 많은 국정감사 감사 대상자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 거부 등에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무보조자(대리인)에게 답변을 넘기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본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감사 대상자들이 업무 현황, 업무 용태를 파악 할 수 없다. 이에 본 위원회는 감사 대상자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 횟수 및 참여율을 높이고,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본 입법청원안을 제안합니다.

2. 주요골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보조자)의 ①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항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응답 중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6조(사무보조자) 1.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사무보조자) 1.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u>다만, 질의응답 중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u> 2.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